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2024.01.01.)

◆ 2024년 재가기관 월 이용료

1.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

(단위 : 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24년 한도액	2,069,900	1,869,600	1,455,800	1,341,800	1,151,600	643,700

2. 장기요양서비스 이용료 및 개인부담금

1) 방문요양(월 20일 기준)

(단위 : 원)

시간	이용료		월 개인 부담금		
	1일 기준	20일 기준(월)	15%	9%	6%
30분	16,630	332,600	49,890	29,930	19,960
60분	27,120	542,400	81,360	48,820	32,540
90분	32,510	650,200	97,530	58,520	39,010
120분	41,380	827,600	124,140	74,480	49,660
150분	48,250	965,000	144,750	86,850	57,900
180분	54,320	1,086,400	162,960	97,780	65,180
210분	60,530	1,210,600	181,590	108,950	72,640
240분	66,770	1,335,400	200,310	120,120	80,120

※ 이용료 산출근거 : 180분 20일 기준 54,320원 X 20일 = 1,086,400원

본인부담금 15%기준 = 158,640원

3.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구 분	재가급여
일반	15%
기초생활 수급권자	0%
기타 의료수급권자	6%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부담환자(희망대상자 및 만성질환자)	9%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	

◆ 비급여대상 항목 및 기타 실비 수납기준

1. 비급여 항목 세부기준

1) 기본원칙

비급여 항목은 **식사재료비, 개인 생필품에 따른 추가비용, 이·미용비**이며, 실제소요 비용만을 산정해야 합니다. 그 밖의 비요은 기관에서 임의로 수납할 수 없습니다.

2) 세부기준

가) 식사재료비 : 경과 영양 유동식, 간식도 식재료비의 일종임

나) 등급외자 :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한 수급자를 대상으로 수납

다) 이·미용비 : 수급자 희망에의해 이·미용사를 초빙하여 서비스 받는 경우 비급여 가능
단, 시설중사자, 자원봉사자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는 비급여 항목으로 수납불가,
손·발톱 정리 등의 명목으로 별도 수납은 불가

2. 비급여 항목 외 실비 수납기준

1) 기본원칙

수급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 및 용역을 시설에서 구매하여 제공하는 경우 실비를 **수납할 수 있으며, 기관은 실비 외에 추가비용을 수납하지 못합니다.**

2) 세부기준

가) 주·야간 보호를 이용하는 수급자의 기저귀 비용 : 사용량에 따라 실비 수납 가능, 또는 수급자가 원하면 이용자가 직접 구입한 기저귀를 이용토록 합니다.

나) 기호품 등 수급자의 희망에 의한 일상용품 구입비용 :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일상용품 (휴지, 비누, 수건 등)에 대해서는 비용 수납 불가합니다.

※ 다만 개인위생품을 선호하는 이용자는 직접 구입 후 사용.

다) 각종 프로그램 비용 : 원칙적으로 프로그램 운영은 장기요양급여의 일환으로 제공되는 기본 서비스 범주에 해당하므로 별도 비용 수납은 불가. 단, 수급자의 **개별적 희망에 의해 외부의 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수급자가 실비를 부담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신원인수 권리 및 의무**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 1)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 2)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 3)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 1) 대상자로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 2)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 3)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 4)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